

군산시 공고 제2014 - 297호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 월 25 일

군 산 시 장

1. 조례명 :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안 제4조)

- 위험도 평가 실시 결정에 관한 사항

나.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안 제5조)

-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평가반장의 자격
- 위험도평가 실시에 대한 주민홍보
- 기타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다.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안 제7조)

- 위험도를 평가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
- 건축물의 위험도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사용
- 평가결과의 부착 또는 표시
- 위험수준 피해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통제

라.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8조)

-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시기
- 후속조치 등에 대한 사항
- 보고서 발간

마. 경비지원(안 제11조)

-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재난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군산시청 재난관리과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우편번호 573-703)

- 전 화 : 063-454-3863(FAX 063-454-3829)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unsan.go.kr)의 시정게시판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해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군산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군산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군산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군산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군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의 방재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정하며 평가반의 반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

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⑦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 지역본부장이 군산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군산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의 위험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군산시 지역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군산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전북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시·군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험도 평가단(평가반을 포함한다.)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색>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No Entry)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군산시 공고 제2014-302호

군산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군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군산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협의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회의 개최 및 서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회의록 작성 보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회원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참조 : 재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 전 화 : 063-454-3861~5, 팩스 063-454-38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재난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오홍재
- 전 화 : 063-454-3862
- 이메일 : cp8433@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에 기재되어있습니다(행정정보⇒ 알림마당⇒입법예고)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군산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군산시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국에 “군산시 자연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명 이내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군산시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계장이 한다.

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의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 제4조에 의한 일비·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		희망 업무 분야	<input type="checkbox"/> 예 방	<input type="checkbox"/> 대비·대응
접 수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복 구	<input type="checkbox"/> 정책관련

개인·기관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위 기관(단체)은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인

[별지 제2호 서식]

군산시 제○○호

회 원 증

개인·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 등록 번호) :

주 소 :

위 개인·기관(단체)은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